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정책과)

의안번호	116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4. 7.)
의 안 명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는 창업 3년이하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 6. 22.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건 물 명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규 모 : 대지 1,825㎡, 연면적 1,368㎡(지하1층 ~ 지상4층)

○ 공간구성

층 별	면적(m²)	주요시설
4층	40	보육실
3층	320	보육실
2층	320	보육실, 노동권익센터
1층	320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보육실, 성북구상공회
지하1층	368	보육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나. 위탁예정기간 : 2023. 6. 23. ~ 2026. 6. 22.(3년)

다.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 및 선정

- 창업지원, 정보제공, 멘토링 등

○ 구청장이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대표자	시설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한성대학교	이창원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2020. 6. 23. ~ 2023. 6. 22. (2000. 3. 23.)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¹⁾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시설현황 : 대지 1,825㎡(약 552평), 건물 1,368㎡(413평),
 지하1층/지상4층
- 입주현황(26실) : 보육실 21(입주 19, 공실2), 상공회 2, 노동권익
 센터 1, 중장년센터 2
- 개 원 일 : 2000. 5. 30.
- 운영위탁 : 한성대학교 , 2020. 6. 23. ~ 2023. 6. 22. (3년)
- 인력현황 : 비상근(센터장, 한성대교수), 상근 1명(총괄매니저, 계약직)
- 사 업 비 : 6,000만원(민간위탁금)

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작업장을 제공하고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곳으로,

○ 우수·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성대학교의 유능한 인력 및 건실한 우수 중소기업의 관내 유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파생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음.

○ 성북구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강좌, 경영컨설팅 등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성북구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한성대학교의 우수한 기술적·인적 자원을 융합하여 모범적인 산(産)·학(學)·관(官) 협력을 실현하고 있음.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²⁾에 따라 성북구 장위동에 설치한 시설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지

2) 제2조(설치)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방자치법」 제117조³⁾ 및 관련 조례 등 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